

☎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 [http://www.kma.org]/전화 6350-****/전송 (02)790-8911
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[6570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[6574] 담당 김윤아[6581]/ E-mail: stephania82@nate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8402호

시행일자 2014. 1. 9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개정 고시(제2015-2호)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호(2015.1.8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보건복지부는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를 개정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동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2015.1.12.~2015.1.16. 중 Q&A를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시행일 : 2015년 2월 1일

붙 임 :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”

수 신 처 : 16개 시도지사회장, 26개 학회장, 20개 개원의협의회회장